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01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문대림·장종태·김영호

조인철 · 강유정 · 전현희

황정아 · 송재봉 · 서삼석

박홍배 • 이광희 • 강선우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 법상 제도적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가 부진한 작황 등으로 계약한 수량의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신설).
- 나.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 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신설).
- 다.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 선정, 품목별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 라.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안 제57조제2항제2 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계약거래지원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가 부진한 작황으로 계약한 수량의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전 대상 농산물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확정 고시된 품목으로 한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전의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전(補塡)하게"를 "보전하게"로 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농산물 적정가격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 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 고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 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되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적정가격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차액의 한도는 해당 농산물 평년가격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밀과 콩을 포함한 양곡, 채소, 과일 등 농산물적정가격제도가 필요 한 대상 품목,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차액 의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③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실시할 때에 대상 품목이 미곡(米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미곡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 제16조의3(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 ①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 품목의 선정

-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 3.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차액 지급비율
- 4. 대상 품목의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적정가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3.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시행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연 앵 <u><신 설></u>	제6조의2(계약거래지원제도) ①
	<u>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u> <u>다.</u>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지원 등) ①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	
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	
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	
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	

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 금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 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u>보전</u> (補塡)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u>보전하게</u>

제16조의2(농산물 적정가격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 · 고시된 농 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 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되 생산비용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 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기준 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적정가격제도"라 한다) 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차액의 한도는 해당 농산물 평년가격 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밀과 콩을 포함한 양곡, 채소, 과일 등 농산물적정가격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 대상품목의 기준가격 및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차액의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적정가격서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실시 할 때에 대상 품목이 미곡(米 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미곡 재배에 이 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미곡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16조의3(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 원회) ① 농산물적정가격제도

<신 설>

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립축산식품부에 농산물적정가 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대상 품목의 선정
-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 장가격
- 3.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차액 지급비율
- 4. 대상 품목의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 립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 1. ~ 2의2. (생 략) <신 설>
- 3. ~ 5. (생략)
- ③ ~ ⑤ (생 략)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적정가격제도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 에 맞는 사람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 ② -----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시 행
 - 3. ~ 5.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